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출연금 지급〉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52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사업시행자에 대한 출연금 지급	2
※ 참고자료	7
1.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일반 현황	7
2. 산업기술단지 조성 지원 현황(최근 3년)	8
3. 산업기술단지 운영비 지원 현황(최근 3년)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9.
3. 회부연월일 : 2024. 1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인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기술단지를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국고 출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적어, 운영비 대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사업 또는 수익사업 등 변동성이 있는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음. 이러한 재원 조달 방식은 산업기술단지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본연의 성격과 맞지 않는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내부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드는 경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기술단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사업시행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드는 경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안 제17조제1항)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u>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u> ② ~ ④ (생략)	제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 ----- <u>조성·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u> ② ~ ④ (생략)

산업기술단지는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로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이 수립·고시된 것을 뜻함.

현행법 제4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17조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그런데, 산업기술단지의 조성뿐만 아니라 운영에 드는 사업시행자의 비용(인건비 및 운영경비)을 지원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말 기준 운영 중인 전국 19개 시·도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 보조·출연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미비한 상황임(참고자료 3).

특히, 이들 사업시행자는 산업기술단지 설립 초기에는 단지 내 입주 기업 관리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였으나, 이후 지역산업 육성 전략 수립 등의 지역혁신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의 실질적 주체로 그 기능과 위상이 강화되고 있음²⁾.

개정안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의 실질적 주체로 기능과 위상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은 초기

1)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주된 기능> (참고자료 1)

① (지역정책 기획) 사업시행자가 중심이 되어 지역 주력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핵심 전략 및 로드맵 수립

② (기업지원 플랫폼) 1조 6,350억원 규모('24년 기준)의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행

③ (기술혁신 거점) TP에 구축된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주기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조성 단계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재 전국 19개 시·도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및 지자체들로부터 2024년 예산 기준 1조 6,350억원 규모의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기업지원 사업을 수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당 평균 수탁사업비는 863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표 1]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수행사업 예산 현황(2024년 기준)

(단위: 억 원)

구 분	정 부				지 자 체	총 계
	중기부	산업부	과기부	기타부처		
수탁사업비	2,222	2,761	744	2,803	7,820	16,350
사업시행자당 평균 사업비	117	145	41	148	412	86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사업시행자는 이와 같은 수탁사업비 중 일부를 인건비 및 운영경비에 직접 충당하거나 간접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음. 실제로 세종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경우 2023년 결산 기준 인건비 지출액 73억 6,000만원 중 62억 9,000만원, 운영경비 지출액 19억 5,000만원 중 8억 1,000만원을 수탁사업비 내 직접비 및 간접비를 통해 충당한 것으로 확인됨³⁾.

3) <사업시행자별 인건비 및 운영경비 충당 현황(2023년 결산 기준, 세종·강원)>

수탁사업비 내 반영된 인건비 및 운영경비의 경우 수탁사업 중단·축소 등의 사유로 감소하는 등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탁사업비와 별도로 국가 및 지자체의 출연금 지급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현재 각 부처 및 지자체별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수탁사업비 내 편성된 인건비 및 운영경비 총당분과 개정안에 따른 사업시행자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중복되어 지급될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에 관한 관련 부처 및 지자체 간 총괄적인 조정·연계 기능을 우선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통상 출연금 지급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대상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공공성이 중시되는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경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⁴⁾. 이를 감안할 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단위: 억원)

구분		세종 산업기술단지	강원 산업기술단지
인건비 총 지출액		73.6	121
수탁사업비	직접비	53.7	99.2
	간접비	9.2	21.8
지자체 출연금		10.7	-
운영경비 총 지출액		19.5	18.3
수탁사업비	직접비	-	-
	간접비	8.1	18.3
지자체 출연금		11.4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4) <비교 입법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6조(출연금) ① 정부는 협력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지위 및 성격,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 및 수익성에 관한 사항, 그 외 사업시행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반적으로 산업기술단지 조성 등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운영비는 지자체 지원 또는 기관 자체 사업 수주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현재의 정부 및 지자체 간 재정부담 원칙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467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2조(출연금) ①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1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일반 현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테크노파크 개요

-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설립 초기에는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관리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였으나
⇒ 지역산업 육성 전략 수립 등의 지역혁신 거점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의 실질적 주체로 기능과 위상이 강화

□ 주요 기능

- (지역정책 기획) 테크노파크(사업시행자)가 중심이 되어 지역 주력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핵심 전략 및 로드맵* 수립
* (지역산업진흥계획) 지역주력산업 관련 전후방 산업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에 대한 로드맵(연간 단위 수립)
- (기업지원 플랫폼) 테크노파크는 1조 6,350억원 규모('24년 기준)의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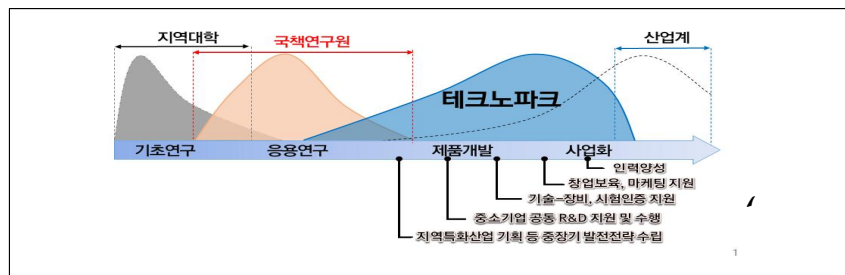
< 테크노파크(사업시행자)의 수행사업 예산 현황('24) >

사업위탁 주체	정부				지자체	총계
	중기부	산업부	과기부	기타부처		
예산(억원)	2,222	2,761	744	2,803	7,820	16,350
사업시행자당 평균	117	145	41	148	412	863

※ ('24년 테크노파크(사업시행자)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주요사업)

- ①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 880억원 ② 스마트공장 사업 : 1,721억원, ③ 「레전드 50+」 프로젝트 : 2,790억원 등
- (기술혁신 거점) 테크노파크(사업시행자)에 구축된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주기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술지원 단계별 지역혁신기관의 역할 체계>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단위 : 억원)

사업 시행자명	2021년 (국비+지방비*)	2022년 (국비+지방비)	2023년 (국비+지방비)
경기	-	-	-
광주	107.9	115.7	448.6
대구	37.0	73.0	58.0
대전	34.8	118.8	114.5
부산	251.8	494.6	355.6
서울	-	-	-
울산	204.5	219.3	151.4
전남	478.0	498.0	488.0
제주	101.0	123.0	360.0
경북	65.6	217.4	265.2
세종	380.5	233.0	64.1
충남	560.3	283.7	499.5
충북	274.3	376.9	565.9
인천	544.4	589.5	635.2
강원	294.3	332.8	425.1
경남	806.0	433.3	447.3
전북	368.0	380.0	517.0
경기대진	-	-	-
포항	264.8	278.4	296.6
합계	4,773.2	4,767.4	5,692.0

* 조성 비용 중 70~80% 가량을 국비로 지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단위 : 백만원)

사업 시행자명	2021년 (지방비)	2022년 (지방비)	2023년 (지방비)
경기	980	980	1,180
광주	-	-	-
대구	-	-	-
대전	2,300	2,300	3,100
부산	100	760	1,600
서울	-	-	-
울산	-	-	-
전남	300	-	-
제주	4,900	5,000	5,800
경북	360	250	250
세종	1,840	2,140	2,210
충남	-	-	-
충북	1,070	1,070	1,270
인천	3,600	4,000	4,000
강원	-	-	-
경남	-	-	-
전북	-	-	-
경기대진	400	500	700
포항	400	400	330
합계	16,240	17,400	20,440

* 연도말 결산서 상 지출금액 기준으로 작성